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21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전진숙・이수진・허종식

김정호 • 정을호 • 김남희

권칠승 • 윤후덕 • 임호선

박희승·김 윤·김선민

강선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는 노인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의 필수 불가결 조건임. 이에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국가와지자체는 다양한 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아동복지법」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경로당 급식 지원 등 노인 급식 지원사업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고물가 상황,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노인급식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의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최저 단가 수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 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5(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 선 설> 제27조의5(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증 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 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 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 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 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 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현 행	개 정 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의5(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증 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 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 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 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 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 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